2025/26

해기사, 도선수습생 등

해양환경관리법

엠북 해양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스마트폰 수험총서
- 1시간 50분 완성
-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-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
도서명 : 해양환경관리법

ISBN : 979-11-7393-063-8

발간일 : 2025-08-20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https://www.mbook.kr/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8,500원

해양환경관리법

(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/관리 조치(p22)

제3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규제(p43)

제4장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규제(p78)

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검사(p104)

제6장 해양오염방제를 위한 조치(p118)

제7장 해양환경관리업 등(p131)

제8장 해양오염영향조사(p137)

제9장 삭제

제10장 해양환경공단(p144)

제11장 보칙(p156)

제12장 벌칙(p181~196)

[약어]

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

청장은 해양경찰청장

부령은 해양수산부령

해양시설등은 해양시설과 해양공간

시군구는 시장, 군수, 자치구의 구청장

설계지수는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

효율지수는 선박에너지효율지수

관리업은 해양환경관리업

관리업자는 해양환경관리업자

공단은 해양환경공단

선박/시설은 선박, 해양시설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4조

1. 목적

- 선박, 해양시설, 해양공간 등 해양오염물질

발생원 관리, 기름, 유해액체물질 등
해양오염물질 배출 규제 등 해양오염 예방,
개선, 대응, 복원에 필요한 사항 정함
- 국민 건강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

2. 정의

1) 해양환경

- 해양 서식 생물체, 이를 둘러싼 해양수,
해양지, 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,
해양에서의 인간 행동양식 포함
-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

2) 해양오염

-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물질이나 에너지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상태

3) 배출

- 오염물질 등 유출/투기, 오염물질 등 누출/용출
- 해양오염 감경/방지, 제거 위한 학술목적 조사/연구 인한 경우는 제외

4) 폐기물

- 해양에 배출시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고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물질

- 기름, 유해액체물질, 포장유해물질 제외

5) 기름

- 원유, 석유제품(석유가스 제외)와 이들을 함유한 액상유성혼합물(액체상태의 유성혼합물), 폐유

6) 선박평형수

- 선박 중심을 잡기 위해 선박에 실린 물
- 그 물에 녹아 있는 물질, 그 물속에 서식하는 수중생물체, 병원균 포함

7) 유해액체물질은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기름을 제외한

액체물질과 그 물질이 함유된 혼합 액체물질

가) X류 물질은 해양배출 금지

- 배출시 해양자원, 인간 건강에 심각한 위해

나) Y류 물질은 해양배출 제한

- 배출시 해양자원, 인간 건강이나 해양의 쾌적성, 적합한 이용에 위해

다) Z류 물질은 해양배출 일부 제한

- 배출시 해양자원, 인간 건강에 경미한 위해

라) 기타 물질

- '위험화학품 산적운송선박의 구조 및 설비를 위한 국제코드'상 기타 물질

- 탱크세정수 배출 작업으로 해양에 배출시 위해 없음

마) 잠정평가물질

- 산적운송 신청시 장관이 상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잠정 평가

8) 포장유해물질

- 포장된 형태로 선박에 의해 운송되는 유해물질 중 해양에 배출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,
- 화약류, 고압가스, 인화성 액체류, 가연성 물질류, 산화성 물질류, 독물류, 방사성 물질, 부식성 물질, 유해성 물질

9) 유해방오도료

- 생물체의 부착을 제한/방지하기 위해 선박/시설 등에 사용하는 도료(이하 방오도료)

중 유기주석 성분 등 생물체 파괴작용 하는 성분이 포함된 다음 도료

· 장관이 방오도료 용도 제한물질로 지정/고시한 화학물질 포함

· 장관이 모든 용도의 금지물질로 지정/고시한 화학물질 포함

· 디우론 포함

· 국제해사기구가 유해방오도료로 정한 도료

10) 잔류성오염물질

- 해양에 유입되어 생물체에 농축시 장기간 지속적으로 급성/만성 독성, 발암성 야기 화학물질

1) 오염물질

- 해양에 유입 또는 해양으로 배출되어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폐기물, 기름, 유해액체물질, 포장유해물질

2) 오존층파괴물질

- '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'상 오존층파괴물질

3) 대기오염물질

- 오존층파괴물질, 휘발성유기화합물, 대기오염물질, 온실가스 중 이산화탄소

4) 배출규제해역

- 선박운항에 따른 대기오염과 이로 인한 육상/해상에 미치는 악영향 방지를 위해 선박으로부터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배출을 특별히 규제하는 조치가 필요한, 다음 해역

가) 발틱해역

나) 다음 경계 내 북해해역

- 북위 62도 남쪽과 서경 4도 동쪽 사이
- 스카게락해협
- 영국해협과 서경 5도 동쪽, 북위 48도 30분 북쪽으로의 영국해협 사이

다) 북아메리카 해역

라) 캐리비안 해역

마) 국제해사기구가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한

해역

5) 휘발성유기화합물

- 탄화수소류 중 기름과 유해액체물질(석유화학제품, 유기용제,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물질)

6) 선박

- 수상/수중에서 항해용으로 사용, 사용될 수 있는 것(선외기를 장착한 것 포함) 및 해저광업을 위한 고정식/부유식 시추선, 플랫폼

7) 해양시설

가) 해역 안이나 해역/육지 간 연속 설치/배치

- 기름/유해액체물질 저장(비축 포함)시설
- 오염물질저장시설
- 선박 건조/수리/해체 시설
- 시멘트, 석탄 등 하역시설
- 폐기물저장시설

나) 해양레저, 관광, 주거, 해수이용을 위해 해역 안이나 해역/육지 간 연속해 설치, 배치, 투입

- 연면적 100 제곱미터 이상 해상관광시설, 주거시설(호텔, 콘도), 음식점

- 관경 지름 600㎜ 이상 취수/배수시설
- 유어장
- 해상송전철탑, 해저광케이블, 해상부유구조물

다) 해역 안에 설치, 배치, 투입
- 국가해양관측 종합해양과학기지

8) 선저폐수

- 선박 밑바닥에 고인 액상유성혼합물

9) 항만관리청

- 무역항/연안항 관리청, 어항관리청, 항만공사

20) 해역관리청

-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,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하는 행정관청(장관, 시도지사)

1) 선박에너지효율

- 선박이 화물운송과 관련해 사용한 에너지량을 이산화탄소 발생비율로 나타냄

2) 설계지수, 효율지수

- 설계지수는 선박 건조/개조 , 효율지수는 현존 선박 운항 단계에서,

· 사전 계산된 선박의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

-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장관

고시 방법에 따라 계산

3)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

- 사후 계산된 선박의 연간 에너지효율을 나타내는 지표
- 선박이 1톤의 화물을 1해리 운송할 때 배출된 이산화탄소량을 장관 고시 방법에 따라 매년 계산

4) 기타

가) 해역은 항만 포함

나) 해양시설 소유자

- 설치/운영자 포함
- 시설 임대시 시설임차인

3. 적용범위

가) 법은 다음 해역, 수역, 구역, 선박/시설 등 해양환경관리에 적용

- 영해, 내수, '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'에 따라 한국이 해양환경 보전 관할권 갖는 해역
- 배타적 경제수역
- 환경관리해역
- 해저광구

나) 상기 해역 등 밖에서 한국선박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법 적용

다) 외국선박(한국선박 외의 선박)이 상기 해역 등 안에서 항해/정박시 법 적용

- 단, 국제항해 종사 외국선박에 다음 적용안함

·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

· 선박연료유 사용량 등 보고 등

· 정기검사, 중간검사, 임시검사, 임시항해검사, 방오시스템검사, 대기오염방지설비 예비검사, 에너지효율검사 등

·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유효기간,

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등 교부받지 않은 선박 항해 등

· 부적합 선박에 대한 조치

· 재검사